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역할과 과제1)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며

○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선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시민명예노동임부즈만 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 이와 더불어 2012년 4월 노동복지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노동자 차별해소와 노동복지 증진에 부족했던 기존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음.

○ 서울시의 노동복지센터 설치 사업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맺은 정책협약에 담긴 내용으로서, 기존 3개 자치구(구로, 서대문, 성동)의 근로자복지센터를 포함하여 2014년까지 25개로 확대되고, 투입예산 역시 2012년 30억 원에서 2014년 75억 원으로 증액될 계획이었음.

<표 1>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관련 주요

날짜	주요 내용
2011. 10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정책협약
2011. 12	서울시 2012년 예산에 노동복지센터 설립예산 30억 배정
2012. 3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계획수립 및 지원 자치구 공모
2012. 4	15개 자치구 선정
2012. 5	노원구 노동복지센터 위탁체 선정
2012. 6	노동복지센터 관련 사업 보류

○ 하지만 2012년 4월 노동복지센터 설치를 위해 15개 자치구를 선정한 이후 같은 해 7월 노원노동복지센터만 개관을 한 채 관련 사업이 보류된 상태임.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자체별 수탁기관을 선정

1) 본 원고는 2012년 7월 월간 『노동사회』에 실린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의 역할과 전망에 관한 제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하는 과정에서 위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단체들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노동복지센터가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확대되는 문제는 노동단체들 간의 갈등조정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지역 공공근로복지시설로서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것임.

- 2014년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되어 가운데, 올해는 노동복지센터가 다른 자치구로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멈출 것인가로 판가름 날 수 있는 시기로 보임.

- 현재 구로구, 서대문구, 성동구, 노원구 이상 4개 자치구에서 노동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 노동복지센터가 지역에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또한 관리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위탁운영을 맡은 노동단체 모두 노동복지센터의 위상을 명확히 잡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이에 노동복지센터가 사업에 내실을 높이고, 지역 근로복지시설로서 위상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4개 자치구의 사업을 개략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함.

2. 노동복지센터의 의미와 쟁점

1) 의미

○ 노동복지는 노동과 연계되어 노동자들과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시장외적인 급여와 서비스를 의미함(박세일, 1988; 신중인, 2004에서 재인용),

- 광의로 근로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행복 또는 만족을 높이기 위해 근로조건이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제 활동

- 협의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과 같은 기본적 근로조건 이외의 부가적 내지 부차적 근로조건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 정책이나 활동

- 노동복지는 다시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를 기준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국가복지와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기업복지 그리고 노조 중심의 자주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서울시 노동복지센터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공공근로 복지시설임.

- 노동복지센터는 근로자의 ‘권리신장’, ‘생활안정’, ‘복지증진’이라는 포괄적인 목적 하에서 운영되고 있음.

<표 2> 근로복지 주체별 복지의 내용

구분	복지의 내용
공공근로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최저임금제, 퇴직금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노동복지회관, 근로청소년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휴가, 휴식: 유급휴가,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등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건강검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세제감면 •취약계층 고용촉진: 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고용촉진 •직업교육훈련실시 •주거안정: 근로자 주택건설 및 근로자 주택자금융자 등 •생활안정: 근로자학자금지원 및 융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근로자여가정서함양: 근로자 문화 예술제, 콘도운영 등
기업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주거안정: 사택, 기숙사, 주택자금대여, 전·월세자금지원 등 •식사지원제도: 구내식당, 외부시설(쿠폰, 현금정산) •기타: 의료 및 보건, 문화·체육, 학비보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종업원지주제, 보육 지원, 휴양시설운영, 통근지원, 생활안정자금대부, 피복비, 원거리 근무지원 등
자주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조비 지급, 근로자복지매장, 근로자장학금지급(노총장학재단) 등

자료: 신종인(2004)

2) 쟁점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노동복지센터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역에서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사업 참여의 주요한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음. 공공우수노조·연맹의 서울본부 역시 ‘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 전략조직화’를 사업참여의 취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 노동조합 내 서울시 노동복지센터를 수탁받는 것에 반대하는 일부 의견그룹은 “노조가 조직화 사업과 같은 노조의 핵심 사업을 정부 재정과 정부 사업에 의존해

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며²⁾, 노동조합의 자주성 훼손에 대한 논쟁으로 전개되는 양상임.

○ 노동복지센터의 운영은 노동조합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

- 노동복지센터를 노동조합이 운영하면서 간접적으로(또는 장기적으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공공근로복지시설(노동복지센터 등)의 위탁운영의 목적으로 ‘조직화’를 내 거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임³⁾.

□ 노동복지센터는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가?

○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근로복지시설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대표적임.

-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기존의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의 기능을 통합한 이후 1992년부터 국비와 지방비가 50:50 비율로 투입되어 교양·교육시설, 생활편익시설, 여가·휴식·문화시설 등 근로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노동부, 2001).

○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두되고 있음.

-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자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설로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수혜대상과 중첩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김준영, 2007).

-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주요한 사업으로 상정하고 있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역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상당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 서울시 노동복지센터도 역시 설립 당시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동일하게 드러낼 가능성이 있었고, 최근 이와 같은 지적이 나타났음⁴⁾.

2) 인용한 부분은 ‘계급적·변혁적 노동운동을 위한 공공운수 현장조직·활동가 연대회의’가 2012년 5월 7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노동복지센터 참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의 제목으로 낸 성명서에서 발췌하였음.

3) 다양한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함에 있어 자신의 종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선교’가 사업참여의 일차적 목표는 아님. 즉 선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될 것임.

4)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2012.12.26)에서 서울시를 비롯하여 외부 위원들 역시 노동복지센터의 위상, 특히 사회복지시설과의 기능 중복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의 사업은 향후 자치구 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서울시는 △무료 법률상담, △근로자 교육사업, △노동조합 지원 및 자문사업, △상생노사관계 정착 및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협력 사업, △일자리정보 제공 및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주된 역할로 상정하고 있음.
- 노동복지센터 설립계획 이전부터 운영 중인 근로자복지센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강좌 및 북카페 운영 등 실제 사업범위는 더욱더 확대되는 양상임. 이러한 상황을 비춰볼 때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복지’를 키워드로 하여 광범위하게 사업범위가 설정되면서 기존의 지역사회복지 및 노동복지서비스와의 중복이 야기될 수 있음.

<표 3> 공공근로복지시설의 기능 비교

기관	기능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1. 무료 법률상담 2. 근로자 교육사업 3. 노동조합 지원 및 자문사업 4. 상생 노사관계 정착 및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협력 사업 5. 일자리정보 제공 및 직업지도, 취업알선과 직업능력개발교육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1. 근로자들의 실태 파악 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3. 근로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 지원 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6. 외국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근로자종합복지관	1.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2. 교양·교육사업 3. 생활편익사업 4. 체육문화사업 5. 기타 지원사업

주: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도시지역 복지관의 기능을 기준으로 함.

자료: ‘노동서비스 허브, 노동복지센터 15개 자치구에 문 연다’(서울시, 2012)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2011. 12. 29 제정)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노동부, 2000)

3. 사업계획 검토

1) 2012년 사업

○ 노동복지센터의 2012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법률상담 및 지원 사업에 1,064

명이 이용했고, 노동복지 프로그램에 32,896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됨.

○ 2012년은 서울시가 노동복지센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투입한 첫해이나, 위상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는 등 지자체 스스로 센터의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함.

- 서울시는 자체 행정위원회(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에서 4개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사업보고로 인원 위주의 실적을 제시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음.

- 특히, 서울시는 2012년 노동복지센터 사업에 대해 ‘사회복지시설과 업무 중복’ 등으로 “노동복지센터의 역할과 정체성 등에 대한 재정립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표 4> 서울시 지자체별 노동복지센터 주요 실적

구분	이용자수	법률상담 및 지원	노동복지 프로그램 (프로그램수/인원)	위탁체
계	33,960	1,064	42개(32,896명)	
구 로	9,475	259	9개(9,216명)	서울남부희망노동센터
노 원	13,572	353	11개(13,219명)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서대문	3,988	217	11개(3,771명)	한국갈등해결센터
성 동	6,925	235	11개(6,690명)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주: 노동복지프로그램 및 참가인원은 2012. 5.1~11.30일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2012)

2) 2013년 사업계획 분석

□ 사업영역 및 예산

○ 노동복지센터의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3억원이 지급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되기도 함.

- 서울시에 지급되는 3억원 중 약 2억원은 사업비로, 1억원은 인건비(3명 기준)로 책정됨.

○ 4개 노동복지센터의 사업영역은 크게 13개로 분류되는 가운데, 센터별로 수행하지 않는 사업영역이 존재하기도 하고 영역별 예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문화 및 복지사업’(19.4%)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다

음으로 ‘교육사업’(14.7%), ‘연구조사’(13.6%), ‘노동건강권 사업’(12.9%), ‘취업창업지원사업’(11.7%) 순서임.

- 센터별 예산 책정에 있어 ‘문화 및 복지사업’에서 편차가 가장 크고, ‘연구조사’ 사업의 편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4개 센터의 사업영역과 예산분포를 종합해 보면, 노동복지센터의 중심사업과 주변사업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노동복지센터의 중심사업이 설정된다면 이는 모든 센터에서 진행해야 하는 ‘공통사업’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성격을 나누는 것이 필요해 보임.

<표 5> 2013년 사업영역별 예산(안) 분포

사업영역	노원	서대문	구로	성동	계
노동법률지원사업	5.3%	11.7%	1.1%	17.2%	9.1%
근로조건개선 캠페인	14.4%	-	12.1%	3.0%	7.2%
연구조사	16.7%	11.7%	12.1%	13.7%	13.6%
노동조합지원	1.1%	-	-	-	0.3%
노동건강권 사업	5.1%	28.0%	2.2%	14.6%	12.9%
사업주 지원사업	1.5%	-	-	-	0.4%
노동복지센터 네트워크 구축사업	2.7%	-	-	-	0.7%
교육사업	11.2%	18.2%	24.9%	5.8%	14.7%
취업창업지원사업	14.1%	9.6%	5.2%	16.8%	11.7%
문화 및 복지사업	22.8%	3.2%	32.3%	22.1%	19.4%
홍보사업	5.1%	14.6%	4.3%	5.2%	7.5%
지역사회 네트워크	-	3.0%	5.8%	1.6%	2.4%
합계	100%	100%	100%	100%	100%

주: 음영은 예산 비중이 높은 상위 세개의 사업을 표시한 것임.

□ 사업 대상

○ 노동복지센터는 모두 ‘취약계층 노동자’를 주요한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세부 사업별로 대상자는 폭넓게 설정되어 있음.

- 노원노동복지센터의 경우 노동법교육 및 법률지원 대상으로 영세사업주를 대

상으로 삼고 있음, 또한 4개 센터 모두 ‘노동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4개 노동복지센터의 해당 지자체의 조례는 일단 사업대상(이용자격)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관내 소재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자체별로 다름.

- 성동구는 조례에서 이용자격(제5조)은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서대문구는 조례에서 이용자격(제4조)은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됨.

○ 지자체 조례에서 대상자를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지역 기준의 거주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노동자까지 포괄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동복지센터에서 사회적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둔다면 이용대상을 노동자로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사업내용

○ 노동복지센터의 13개의 영역 내 세부사업은 매우 다양하며, 일부 사업은 기존 공공영역에서 이미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함.

○ 먼저, 입직에서 퇴직까지 노동생애 동안 노동자가 직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내 제도가 존재함. 이는 노동복지센터가 구직, 직업훈련, 노동분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공공부문의 인프라 및 서비스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짐.

○ 기존 공공복지시설 및 제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다면 기존 공공부문과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함.

- 예를 들어, 노원노동복지센터는 구직자 및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 ‘취업관련 소양교육’을 계획했음. 노동부 지역고용센터(취업지원), 지역 내 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영어교육) 등 지역 내 유사한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이 존재하는데 차별성은 무엇인가?

- 성동근로복지센터는 인쇄 노동자 및 종사희망자를 대상으로 ‘편집디자인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음. 재직자 훈련프로그램(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디자인교육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또한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는 통기타, POP손글씨 등 문화강좌를 시행하고 있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일한 강좌가 있는데, 노동복지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 6> 센터별 사업 중복 예시

구분	사업영역	대상 및 주요 내용
노원	· 취업창업지원사업 - 취업관련 소양교육	· 구직자 및 경력단절자 · 면접교육, 영어회화, ppt발표 등
구로	· 문화 및 복지사업 - 문화강좌(통기타, POP손글씨)	· 관내 근로자 · 프로그램별 노동자 참여
성동	· 취업창업지원사업 - 편집디자인교육	· 인쇄노동자 및 인쇄업 종사 희망자 · 인쇄디자인 습득 및 활용능력 향상

○ 노동 관련 기존 공공부문 인프라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들이 갖는 양적·질적 문제를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것을 노동복지센터의 과제로 상정해 볼 수 있음.

- 기존 노동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지만, 노동복지센터가 동일한 사업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역할 보완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인프라 확대에 긍정적일 수만 없을 것임.

4. 마치며

○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 노동단체는 해당사업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등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한 적극적인 주체로 역할을 부여받게 됨.

- 첫째, 노동복지센터가 상시 조직체로 운영되면서 노동자 복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둘째, 노동단체는 지자체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근로복지시설에 대해 견제와 참여의 역할을 부여받음.

- 셋째,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단체들이 센터 운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

○ 노동단체가 노동복지센터의 운영에 참여할 때는 자신의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도구로 접근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함.

□ 노동복지센터의 위상

○ 노동복지센터는 기존 공공부문의 사업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에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의 위상을 기존 노동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노동 네트워크 허브'로 설정해 볼 수 있음.

- 노동 네트워크 허브는 노동 및 노동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가짐으로서, 기존의 인프라와 중복의 문제를 피하고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제기할 수 있음.

○ 노동서비스 허브 → 노동 네트워크 허브

- 공공부문 내 기존 노동복지 인프라와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노동 및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내 자원(민간, 공공)을 연계
- 지역사회 내에서 노동단체 사업 지원

□ 노동복지센터의 사업

○ 노동복지센터는 공공근로복지시설로서 사업의 범위는 공공부문의 다른 근로복지 시설 및 제도와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우선 기존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일 경우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함.
- 다음으로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의 핵심사업이 무엇인지(또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정해야 함.

○ 현재 노동복지센터의 사업은 핵심사업이 무엇인지에 정해진 것이 없음.

- 노동복지센터의 기능(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노동복지센터 위상에 따른 핵심 기능 및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노동단체가 모여서 핵심사업을 정한 후, 모든

노동복지센터는 핵심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삼고, 자치구별로 지역 특화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해 왔던 노동단체들의 사업을 극대화시키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일차로 상정할 수 있음.

□ 노동복지센터 이용대상

- 서울시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지만 생활권을 명확히 나누기 어렵고, 노동복지(근로복지)를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려움

- 현재 조례에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대문구와 노원구 조례에서는 관내 사업장 노동자가 이용자격에 빠져 있음.

- 이에 조례 상에 노동복지센터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별로 이용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노동복지센터 평가

-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노동복지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자치구가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체계임. 그리고 자치구는 노동복지센터를 노동단체에 위탁함.

- 현재의 구조에서 노동복지센터의 운영 및 사업은 일관된 방향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이며 노동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구 간 소통체계가 없을 경우 사업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임.

- 서울시는 노동복지센터의 운영이 일관된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 또한 실적 위주의 획일적 평가를 경계하면서, 공통평가 항목과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자치구별 평가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준영, 2007, 『전국근로복지시설 운영실태 보고서』 ; 박지순 외, 2010,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 , 근로복지공단
- 노동부, 2001, 『2001년 노동백서』
- 서울특별시, 2012,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제9차) 회의자료」 .
- 신종인, 2004, 『공공근로복지서비스 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봉, 2012,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역할과 전망에 관한 제언”, 『노동사회』 제 165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